

# 자료순서

1. 기자회견문
2.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
3. 2008년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사업계획
4.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의 문제, 왜 제기하는가?(2007년 조사결과보고서)

## [기자회견문]

#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

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업현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백화점의 판매직 노동자, 할인마트의 계산원 노동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직 노동자, 호텔 서비스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도 의자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많이 알려진 아이스크림 전문점, 패스트 푸드점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의자는 없다. 이들은 의자가 있어도 매장 이용자용이라 앉을 수가 없어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처럼 유통,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대고객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하루 종일 서있기 때문에 전신피로를 비롯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재보호에서 소외되고 건강권을 인정받지 못한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먼저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의자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처지를 알리고,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무시하고 폄박해도 무방한 대상이 아니라 아끼고 존중해야 할 노동자임을 분명히 한다.

서비스여성노동자는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면서 서서 일하는 고통과 감정노동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에 간혀있다. 서비스여성노동자가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용자도 즐거워 질수 있는 바,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게 된다면, 억지웃음 시늉을 하지 않고 고객을 향해 진정한 웃음을 지으며 노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하지정맥류나 다리와 발의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심혈관계질환, 조산이나 유산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2007년 민주노총의 조사결과에서도 서서 일하는 것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호소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

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로 하여금 고객이 없을 때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일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사용자 중에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제공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위법 행위와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서서일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나아가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을 세워놓는 관행이 ‘서비스 노동을 천시하는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별로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일의 75 % 이상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경우 30-40 %이나, 북미대륙은 50-70 %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스웨덴의 경우 하루 일의 1/10 이상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는 20 %도 채 안된다고 한다. 서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노동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내는 한 예이다. 외국에서도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운동이 전개하였는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면 서비스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

민주노총은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작업현장에 의자 놓기 운동, 대국민캠페인 등 실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 시민·사회단체가 ‘의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2008년 3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1. 경과 보고 및 추진계획

2006년 8월 1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2차 회의에서 취약분과와 건설분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만들기로 결의. 취약분과는 비정규,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단위.
2006년 12월 1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4차 회의에서 취약분과 건설과 관련한 방침 결정(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모범 활동사례를 만들어 취약분과 전체적으로 확산)
2006년 12월 28일	취약분과 준비를 위한 1차 회의(서비스연맹)
2007년 1월 31일	취약분과 준비를 위한 2차 회의(서비스연맹 : 외국 도소매업의 안전보건 실태 검토)
2007년 4월 23일	취약분과 준비를 위한 3차 회의(서비스연맹 : 외국 서비스 관련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분석과 교훈)
2007년 5월 22일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을 위한 준비회의(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대책회의)
2007년 6월 5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
2007년 6월부터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안전보건 의제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시작
2007년 11월 14일	“서비스 비정규 노동자 현실과 과제” 세미나에서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발표
2007년 11월 28일	서비스연맹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유통서비스 관련 발표
2007년 12월 17일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안전보건 의제개발 중간보고서 완성하여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에게 2008년 건강권 의제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안
2007년 12월 24일	서비스연맹 08년 사업계획 논의 및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사업 추진 결정
2008년 1월 14일	서비스여성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위한 기획단 구성 및 첫회의
2008년 2월 13일	서비스여성노동자 건강권 사업을 위한 기획단 2차 회의, “서비

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사업을 위한 백화점 여성노동자 근로  
실태조사 계획 확정

- 2008년 2월 28일 서비스연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사업 계획 승인
- 2008년 3월 10일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근로실태조사 시작
- 2008년 3월 19일 기자회견
- 2008년 3월 20일 - 4월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 구성
- 2008년 5월 초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여성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2008년 5월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시작

## 2.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사업계획(안)

### 1) 추진배경 및 목적

-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없을 때 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사업주와 노동자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고자 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
-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여성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한국사회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초기에 광산노동자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최근까지 주로 제조업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의제가 형성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진폐예방과 제조업 공장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규제내용과 형식이 만들어져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안전보건 권리는 특정 업종과 규모의 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건설이나 서비스, 공공운수, 사무금융 등 비제조업 분야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논의와 의제개발이 매우 부족하며, 비제조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2007년 6월부터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의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노동조합 활동을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이 서비스여성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물리적 폭력이 심각한데, 그 원인을 서비스노동자를 무시하는 사회문화에서 찾고 있었다. 직업의 귀천을 차별하는 의식이 서비스노동을 무시하면서 그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만든다는 결론이었다.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서비스노동자를 존중하는 날” 캠페인을 통하여 고객과 서비스노동자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비스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는 캠페인 역시 진행하고 있었다. 서비스노동자들이 계속 서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업주가 서비스노동을 경시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를 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이러한 법조항이 현실적 효력을 갖도록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여, 서서일하는 모든 노동자, 특히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도 안전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민주노총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유통업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정노동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구축될 때,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 사업은 서비스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등 주요 유통서비스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은 내부규정에 의하여 의자가 없이 서서 일하고 있음
-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서비스 여성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의자놓는 캠페인”과 “서비스노동자를 존중하는 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서비스여성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의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이 어떠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캠페인 사업을 통해 사회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2007년부터 이러한 캠페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이미 캠페인 사업의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단위를 구성하였음. 기획단에는 여성사회학자, 산업의학전문, 법률전문가, 인간공학전문가 등이 결합하고 있음. 서비스연맹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 서비스연맹 소속 백화점 화장품노동자 1000여 명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 수행,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여부, 화장실, 휴게실, 건강증상 등 다양한 조건 확인, 현장 인터뷰를 통해 캠페인 주제 및 방식 확정

-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캠페인 수행

: 캠페인용 의자 제작 및 각종 선전물 제작, 사회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캠페인단 구성, 서울시내를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에서 의자놓기 캠페인 전개

- 유통서비스 분야 여성노동자에 대한 교육

: 유통서비스 분야 여성의 노동안전보건실태, 여성노동자의 권리, 의자를 놓는 캠페인의 의미 등

- 캠페인 사업 평가 및 후속대책 논의

서비스연맹 산하에는 백화점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는 샵넬, 엘카, 로레알코리아 등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2000명이 넘는다. 화장품 매장은 백화점의 얼굴로서 1층에 자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백화점 업종의 노동자에게 앉을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노동자들 스스로도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잘 알려주어, 불필요하게 서서 일하는 것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을 상대로 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고객들은 백화점을 방문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주와 고객, 노동자들에 대한 캠페인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는 서비스연맹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사업주, 고객,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서서 일하는 노동의 문제를 조사하여, 의자 제공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연맹은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1인, 여성부장 1인과 함께 산업의학전문의 2인, 여성사회학자 1인, 노무사 1인, 인간공학전문가 1인,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 1인, 총 8인으로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였다(아래표, 가나다순).

성명	소속	직위	전공 및 학위
김신범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위원 교육실장	산업보건학 석사
윤간우	녹색병원	의사	산업의학
이수정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여성학 석사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산업보건학 박사(인간공학)
이천호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여성부장	
정진주	미래사회와건강연구소	소장	보건사회학 박사
정최경희	경희의료원	의사	산업의학

서비스연맹은 이들을 통하여 조사사업을 들어갔다. 이 조사결과는 2008년 5월에 발표될 것이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캠페인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내용 및 방법

사업 내용	사업 방법
1. 실태조사 (2008년 3월-5월)	1) 설문조사 : 서비스연맹 소속 백화점 여성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하여 건강증상 및 서서 일하는 시간, 화장실 등 작업조건 조사 2) 현장조사 : 서울지역 백화점을 중심으로 백화점 여성노동자에게 의자가 제공되는지 여부, 매장 구조, 화장실 위치와 개소, 식수의 제공여부, 휴게실 조건 등 3) 실험조사 : 약 10-20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동안의 근육피로도 실험연구
2. 조사결과 토론회와 공유 (2008년 5월)	1) 정부 및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하여 유통서비스 분야 여성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 2) 실태조사 결과를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교육(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노동자들을 대상)
3. 캠페인단 조직과 운영 (2008년 5월-10월)	<p>1) 안전보건 전문가 및 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을 공개적으로 구성</p> <p>2) “서비스여성노동자를 존중하는 의자” 제작, 각종 리플렛과 만화 선전물 제작하여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정기적인 캠페인 진행, 의자에 동의하는 고객 선언 조직,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대해 “서비스노동자를 존중하는 사업장” 현판 수여 등</p> <p>3) 캠페인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추진</p>
4. 평가 및 후속대책 논의 (2008년 11월)	<p>캠페인 평가를 통해 우리사회가 서비스여성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점검하고, 유통서비스 분야 여성노동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인 “감정노동”에 대해 후속 대책을 논의</p>

### **3.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의 문제, 왜 제기하는가?**

**중간보고서**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 개발**

**2007. 12.**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중간보고서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의 2008년 사업논의를 위해 제출되는 것입니다. 주로 “2008년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단 구성논의”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실태와 관련한 인터뷰를 더 진행하여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2007년 12월

책임연구원 김신범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실장

# 차 례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과정	2
3. 해외 도소매업 분야의 산업재해 통계 검토 결과	3
1) 영국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실태	3
2) 캐나다 New Brunswick의 도소매업 산업재해 실태	5
3) 미국 도소매업의 산재실태	8
4) 호주 Western Australia의 산재실태	41
5) 종합정리	15
4. 해외 유통서비스 관련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의제와 활동사례	16
1) RWDSU	16
2) USDAW	18
3) Hazards	27
4) 해외 노동조합 의제 및 활동에 대한 평가	27
5. 조합원 인터뷰 결과	28
1) 주로 발견된 안전보건 문제	28
2) 주요 문제의 정리	32
6. 주요 의제와 접근방향에 대한 제안	32
1)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규제 현황과 과제	32
2) 중요 과제	35
3)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에 대한 제안	36
7. 참고문헌	38

##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사회의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초기에 광산노동자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최근까지 주로 제조업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의제가 형성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진폐예방과 제조업 공장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규제내용과 형식이 만들어져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안전보건 권리는 특정 업종과 규모의 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설이나 서비스, 공공운수, 사무금융 등 비제조업 분야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논의와 의제개발이 매우 부족하며, 비제조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도 중대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안전보건의 수준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통계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국적(이주노동자), 성(여성노동자), 연령(미성년자노동 및 고령노동자) 특성에 따라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노동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6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한 이후,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7년 6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하여 취약분과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의제 개발을 결의하였고, 본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아직 서비스연맹은 안전보건 담당자를 연맹에 두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정책 및 활동방식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연맹과 취약분과가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여, 2008년부터 서비스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이 전개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해외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의제와 사회적 대책을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 법조항을 고찰한다. 셋째,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유통서비스 노동자 관련하여 2008년 어떠한 의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 2. 연구 방법과 과정

해외의 유통서비스 관련 노동조합은 상당히 많았다. 각각의 활동을 모두 고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슈와 활동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분석대상 노동조합과 활동을 정하였다. 영국 USDAW와 미국의 RWDSU가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서비스 노동자 관련 안전보건 의제와 활동내용을 자세히 제공하고 있어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다. UNI의 경우는 콜센터의 안전보건에 대한 활동정보가 많이 있었으나, 본 연구가 주로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안전보건 단체인 영국의 Hazards는 유통서비스 관련 의제를 참고할 수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유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는 조사된 바가 없었고, 유통서비스 분야의 재해와 관련된 통계도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외국의 유통서비스 관련 재해통계 자료와 기타 문헌을 참고하여 유통서비스 분야의 안전보건 문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가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건 문제와 실태를 정리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유통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외국에서 나타난 안전보건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각 문제의 중요도나 개선필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20명에 대해 면접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에게 해외사례를 통해 정리된 유통서비스 분야의 안전보건 문제를 설명해주고, 그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떤 문제를 일하면서 경험하였는지 확인하였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각 문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활동 및 정부의 대책 등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의제와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 3. 해외 도소매업 분야의 산업재해 통계 검토 결과

해외 유통서비스 분야의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도소매업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이나 각종 매장을 따로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나라는 없었으므로 도소매업 전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1) 영국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실태

영국의 도소매업종 산업재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질병을 구분하여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제공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① 사고성 재해

표 5. 영국 도소매업의 사고성재해 발생 추이(96/97 - 05/06, 10만 명당)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중대재해 (Fatal Injury)	0.4	0.4	0.3	0.2	0.3	0.3	0.4	0.3	0.2	0.3
중요재해 (Major Injury)	92.4	90.1	79.4	74.6	70.1	77.4	80.4	89.3	87.4	82.6
3일 이상 재해	369.1	419.8	396.7	363.2	351.2	325.6	344.4	353.2	340.5	332.7

출처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2005/06년 기간 동안 도소매업에서 총 16명의 사고성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수치는 04/05년 11명에 비해 높은 것이다. 05/06년에 사망한 사람중 13명은 노동자이며, 3명은 자영업자였다. 사망한 노동자 중 4명은 이동 중인 운반수단과 부딪혀서 사망하였다. 이 업종의 중대재해율은 04/05년 0.2로부터 05/06년 0.3으로 증가하였다. 1996/97년부터 2005/06년에 이르기까지 중대재해율은 어떤 경향성 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십만명당 중요재해율은 04/05년의 87.4에서 05/06년 81.0으로 감소했다. 3658명 중에서 1387명(38 %)은 넘어져서 생긴 사고였으며, 722명(20 %)는 물건을 취급하거나, 들거나, 나르다가 발생되었고, 555명(15 %)은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

아서 발생한 사고였다. 우리나라의 재해율과 유사한 3일 이상 재해의 경우는 10만명당 332.7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백분율로 재해율을 환산하면 0.33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통계조사에서는 도소매업의 산업재해가 타산업보다 낮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국정부가 수행하는 노동력통계조사(LFS)에 따르면 2004/05년도 도소매업의 재해율은 10만명당 1050명으로 다른 산업 수준(1090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1.1 %이다. 한편 사업주들의 보고로 작성되는 RIDDOR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성 재해는 도소매업에서 04/05년 428명이 발생되었으나, 05/06년에는 407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LFS의 통계결과는 2000/01년부터 점차 조금씩 재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직업성 질환

2005/06년에 조사된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에서 116,000명이 직업에 의해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즉, 10만 명당 2600명이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결과는 전체 산업의 결과인 10만명당 3100명에 비해 확실히 낮은 수치이다.

도소매업의 직업성질환 유병율은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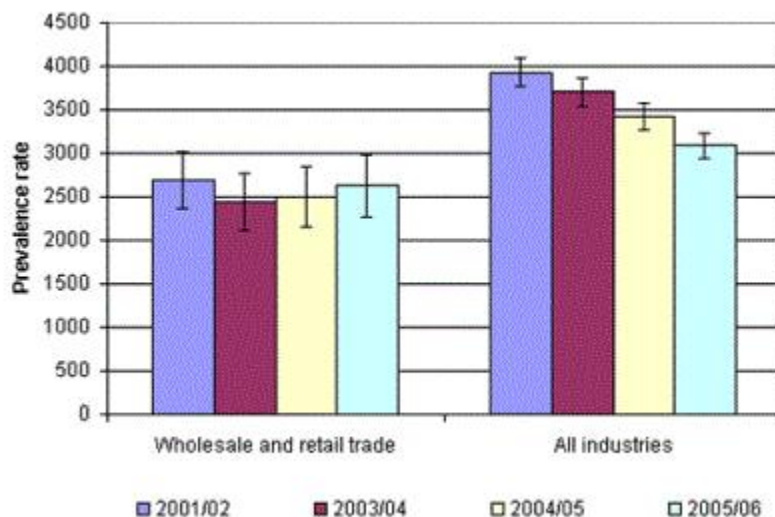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도소매업종과 전체산업의 직업성질환 유병율 비교

도소매업의 직업성 질환자수를 2001/02부터 2005/06년까지 비교해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산업은 같은 기간 동안 꾸준히 유병율이 감소하고 있었다.

2005/06년에 새로 발생한 직업성 질환자수는 전체 산업에 비해 도소매업이 낮았다. 2004/05년에 도소매업에서 일하다가 새로이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10만명당 1300명이었다. 전체산업의 응답자는 10만명당 1600명이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전체산업에 비해 도소매업에서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피부질환, 상지 질환, 스트레스 등이 도소매업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nual average incidence rates of occupational diseases seen by disease specialist doctors in the THOR surveillance schemes; 2003-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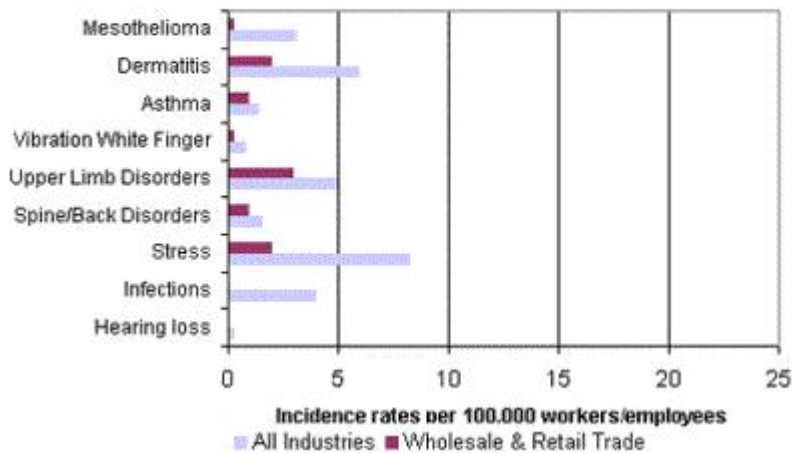


그림 2. 영국의 도소매업종과 전체산업의 직업성질환 발생을 비교(10만명당)

## 2) 캐나다 New Brunswick의 도소매업 산업재해 실태

영국의 경우 도소매업의 산업재해가 전체 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의 New Brunswick 주였다. 자료는 Workplace, Health Safety and Compensation Commission의 Prevention Service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였다.

도소매업에는 음식, 의복, 가정용품, 자동차용품, 배관자재, 건축자재, 기계설비 등등

다양한 상품이 취급되고 있다. 캐나다 New Brunswick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는 1999년 35,067명에서 2003년 36,517명으로 4.1 % 증가하였다. 전체 산업에서 산재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업의 노동손실 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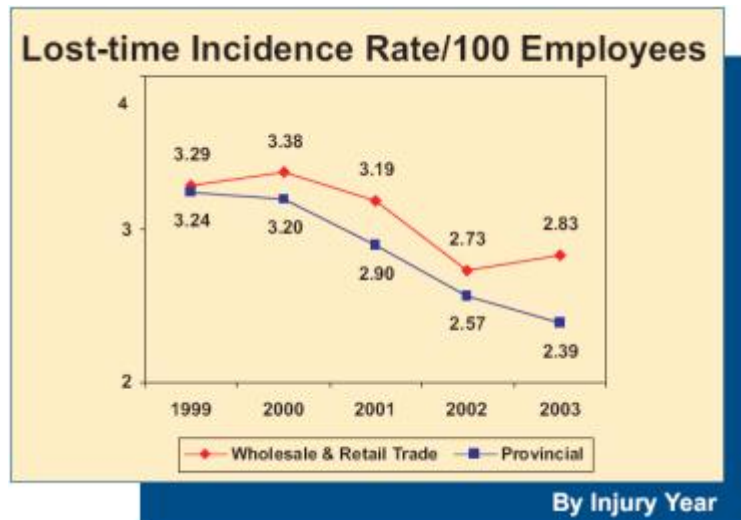


그림 3. 캐나다 New Brunswick 주의 도소매업종과 전체업종의 재해율 추이 비교(노동손실이 발생한 100명당 재해율)

세부적인 분야별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물건을 들거나 밀거나 끄는 작업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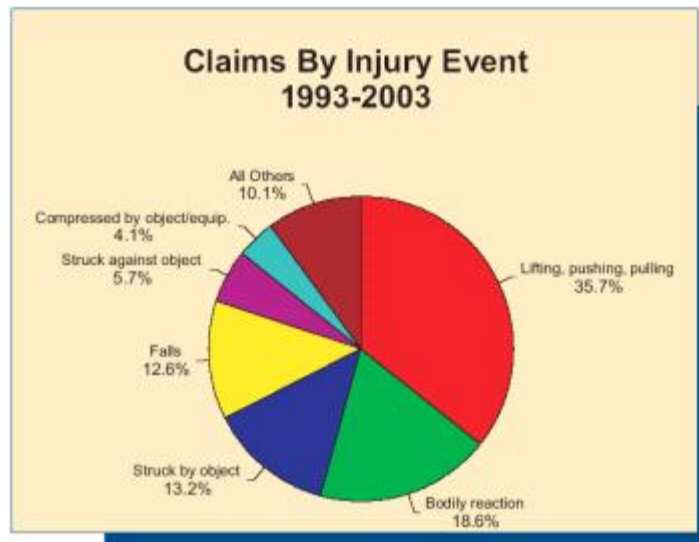


그림 4. 산업재해 보험에 의해 파악된 도소매업종의 사고성 재해 원인(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상해의 종류로는 빠임, 접질림 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요통이나 등과 관련한 사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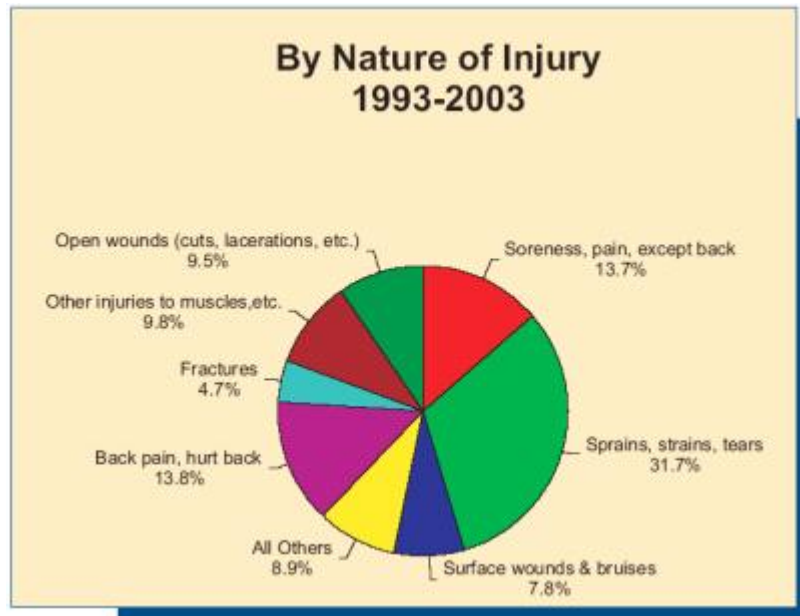


그림 5. 산업재해 보험에 의해 파악된 도소매업종의 사고성 재해 종류(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신체손상부위는 척추부위가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손과 손목, 손가락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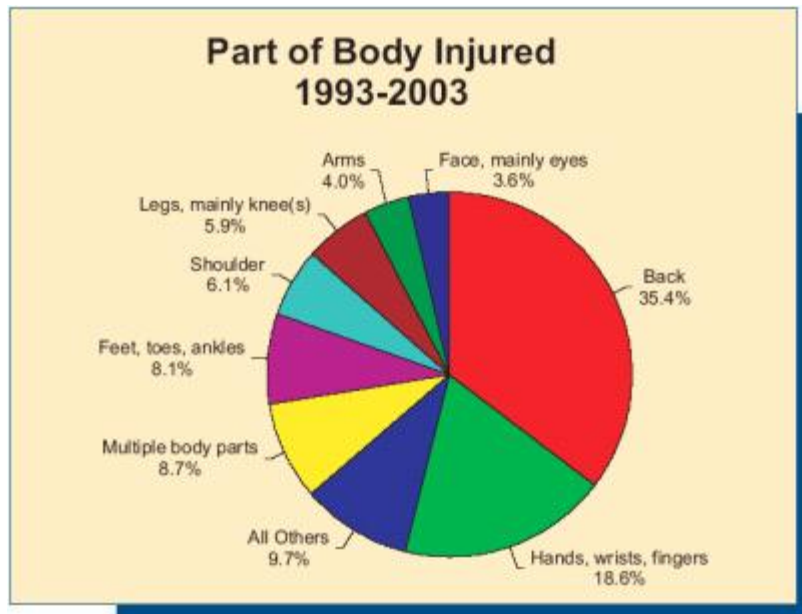


그림 6. 산업재해 보험에 의해 파악된 도소매업종의 사고성 재해 부위(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직업별로는 판매직점원/일용품판매자가 가장 많았고, 물품정리/창고 점원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지게차 등 운송수단 관련 업종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7. 산업재해 보험에 의해 파악된 도소매업종 사고성 재해의 직종별 분포(캐나다 New Brunswick, 1993-2003)

### 3) 미국 도소매업의 산재실태

미국의 전국적인 재해상황은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미국노동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도소매업의 비율이 높은 메사추세츠 주의 안전보건 통계를 구하여 세부적인 도소매업 재해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메사추세츠 주 정부의 안전보건국 자료를 활용하였다.

① 미국의 전국적인 도소매업 재해실태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따르면, 미국에서 2천1백만의 노동자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4년에 843,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쳤다. 이 중에서 60 %는 하루 이상 일을 쉬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다. 미국노동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특별히 위험한 통신판매나 가솔린 주유소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미국에서 어린 노동자는 도소매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6-19세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 두 배 더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미국노동통계청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산재통계를 보도록 하자.

가. 산재사망

2004년에 미국 도소매업에서는 57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많은 수의 사망자들이 가솔린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리고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는 곳이다. 사망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6. 민간산업분야<sup>†</sup>의 산재사망사고\* 통계(미국, 2004)

도소매업	사망자		사망원인 <sup>§</sup>			
	수(명)	백분율 (%)**	고속도로 †	살인 사건	추락	물체에 맞음
<b>도매업</b>	203	4	42	5	6	9
내구소비재(차, 가구 등) 판매자	99	2	29	6	6	16
비내구소비재(의복, 식량 등) 판매자	95	2	54	4	6	-
<b>소매업</b>	372	7	19	43	10	4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 딜러	75	1	40	20	5	8
건축자재 및 공원용품 판매	39	1	26	-	15	-

음식 및 음료 판매	83	1	5	69	7	-
건강 관련 상품판매	17	§§	24	47	18	-
주유소	44	1	7	84	-	-
스포츠, 취미, 책, 음악 관련 판매	15	§§	-	53	-	-
잡화점	26	§§	-	19	46	-
기타 도매상	28	§§	25	-	-	-
무점포 도매상	15	§§	47	-	-	-

\* Totals include data for industries not shown separately.

† Based on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2002.

§ The figure shown is the percent of the total fatalities for that industry group.

\*\* The figure shown is the percent of total occupational fatalities.

‡ "Highway" includes deaths to vehicle occupants resulting from traffic incidents that occur on the public roadway, shoulder, or surrounding area. It excludes incidents occurring entirely off the roadway, such as in parking lots and on farms; incidents involving trains; and deaths to pedestrians or other nonpassengers.

§§ Less than or equal to 0.5 percent.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Summary, 2004 (<http://stats.bls.gov/news.release/cfoi.nr0.htm>)

#### 나. 비사망 재해 및 질병

2004년까지 도소매업의 산재율은 크게 변동없이 유지되는 편이다. 단 소매업이 100명의 풀타임 노동자 당 5.3%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 4.5%인 도매업보다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다. 새로운 주제

한편, NIOSH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소매업 분야의 새로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것이다. 도소매업 분야의 새로 떠오르는 안전보건 이슈들은 경제구조의 변화나 세계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도소매업은 이직율(turnover)이 높고, 기술숙련도가 낮으며, 이 때문에 어린 노동자나 고령 노동자 모두 다양하게 많이 고용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떠오르는 이슈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제, 고객을 상대로 한 노동과정의 스트레스(대면접촉 및 텔레마케팅 모두)가 있다고 한다.

제시간에 적재하고 진열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에 대한 압박은 증가하고 노동자의 자기 노동에 대한 결정권은 감소하게 된다. 사회심리적 문제들이

증가하면서 작업장 내의 폭력 발생을 부채질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발생부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리프팅 장비들을 점차 많이 도입함으로써 허리나 다리의 부담은 감소할 것이며, 키보드를 더 많이 다뤄야 하고 모니터를 더 많이 봐야하기 때문에 상지, 어깨, 목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부위가 바뀔 것이다. 또한 힘이 들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행동이나 고정된 자세 같은 문제는 중요한 주제이다.

## ② Massachusetts(MA 주) 도소매업 재해 현황

MA 주 정부는 2002년까지 도소매업의 재해율을 별도로 구해 제공해왔다. 분석자료는 2001년의 재해자료이다. MA 주 인구는 2001년 6,379,304명이며, 이 중 노동인구는 3,276,105명이다. 그리고 도소매업에는 739,700명이 고용되어 있다. MA 주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1.6 %이며, 노동인구에서는 22.6 %를 차지하고 있다. MA 주에서 도소매업의 산업재해는 전체 재해의 26 %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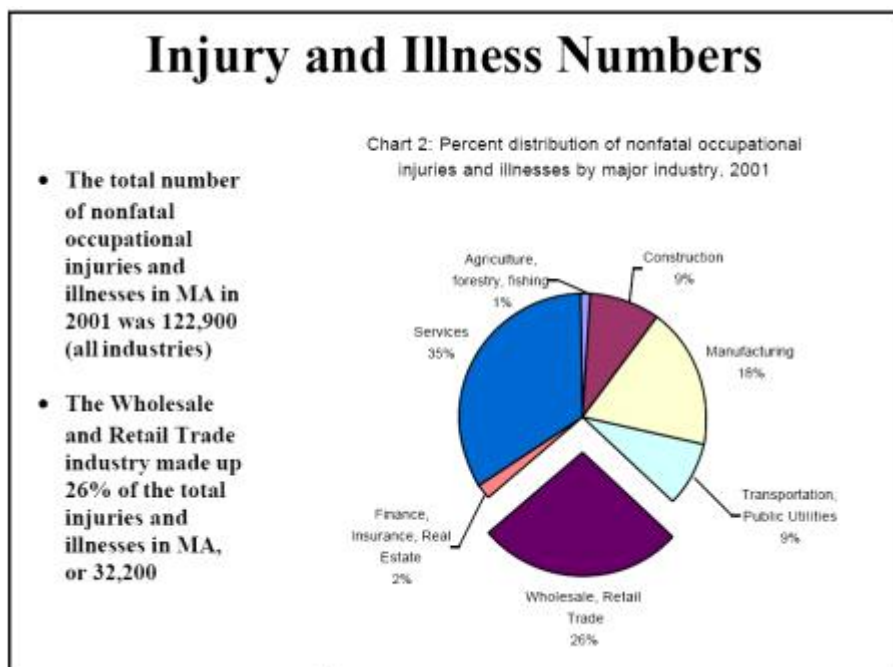


그림 8. MA 주의 업종별 산업재해 분포

MA 주의 산재사망자수는 2001년 53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4명이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도소매업의 산재사망자수는 연도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1999년에는 11명, 2000년에는 10명이었고, 1998년에는 4명이었다. MA 주 도소매업에서 발생

한 산업재해의 총 건수는 2001년 32,200명이다. 전체 도소매업의 취업인구 739,700명을 대입하면, 4.35 %의 재해율이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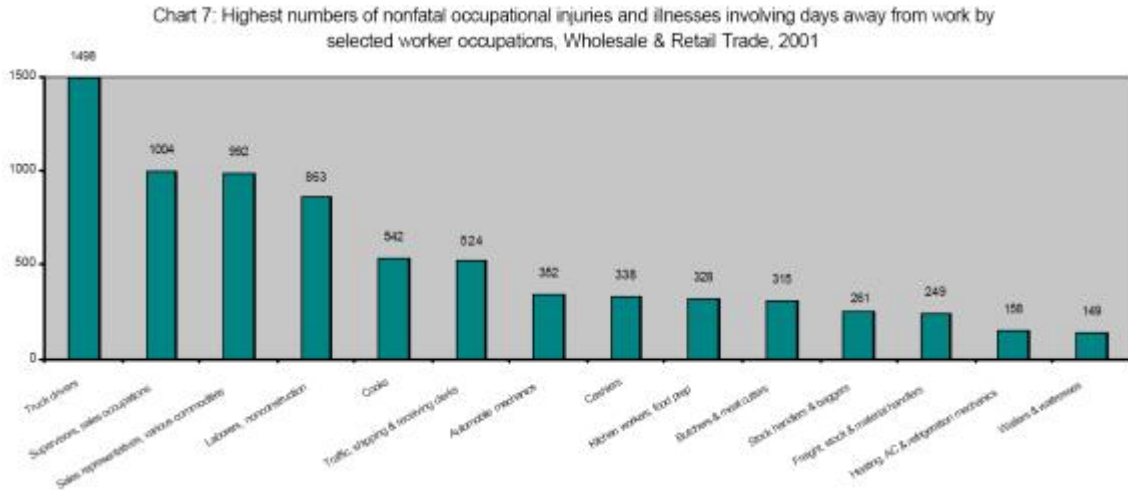


그림 9. 도소매업종의 직군별 비사망 재해 발생수준(고위험 직군)

재해건수가 높은 직업군은 트럭운전사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품 판매와 관련된 직업군에서 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재해는 고른 연령층에서 발생되고 있었다. 재해 발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과도한 동작(overexertion)이 가장 높은 30 %를 기록하고 있었고, 물체나 장비에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28 %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넘어지는 것이 16 %,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7 %를 차지하고 있었다.

# Event or Exposure

Chart 9: Percent distribution of nonfatal injuries and illnesses involving days away from work by event or exposure, Wholesale & Retail Trad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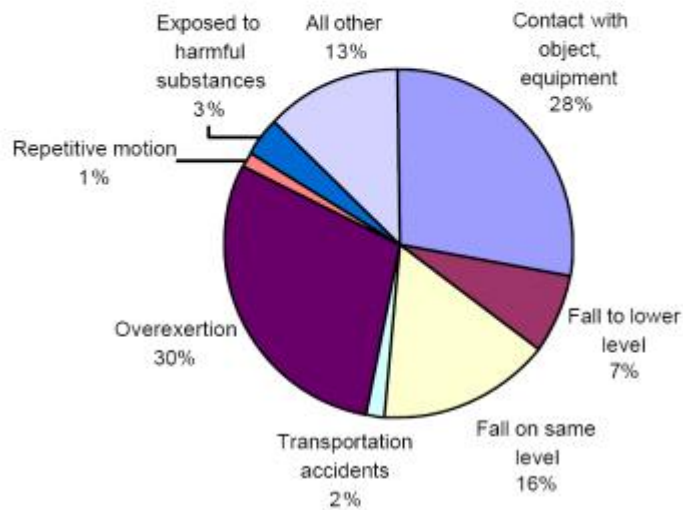


그림 10. MA 주 도소매업종의 주요 재해 원인

이러한 재해로 인하여 뼈거나 접질리는 것이 44 %로 가장 높았고, 타박상이 12 %, 베이거나 찢리는 것이 12 %, 골절이 9 % 등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로는 척추 30 %, 팔다리 각 21 %씩으로 높게 나타났다.

## Nature of Injury

Chart 10: Percent distribution of nonfatal injuries and illnesses involving days away from work by nature of injury, Wholesale & Retail Trad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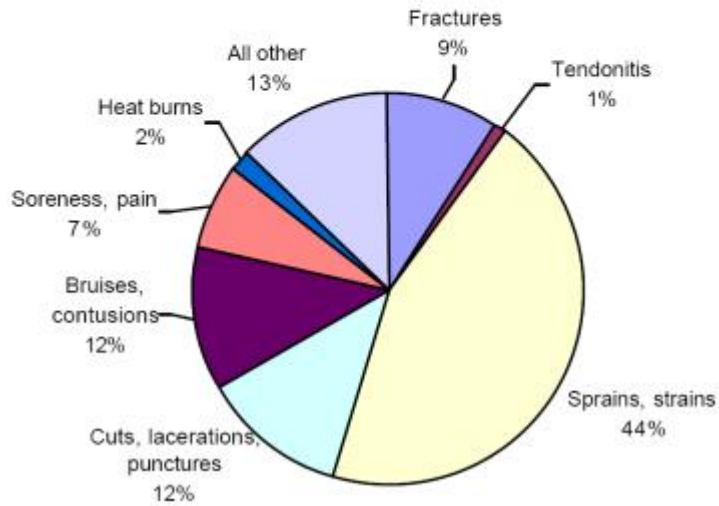


그림 11. MA 주 도소매업 재해의 주요 형태

## Part of Body

Chart 11: Percent distribution of nonfatal injuries and illnesses involving days away from work by part of body, Wholesale & Retail Trade,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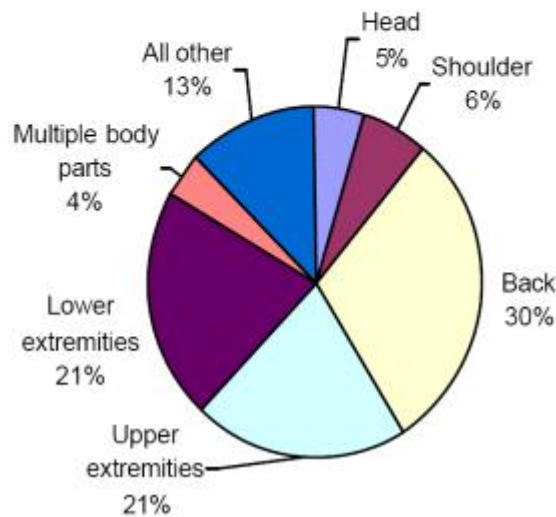


그림 12. MA 주 도소매업 재해의 주요 손상 부위

#### 4) 호주 Western Australia의 산재실태

호주의 최근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고, 1999/00년의 소매업 재해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재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어 좋은 참고가 되었다. 1999/00년도에 WA에서 소매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118,300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발생된 직업성 질환과 사고성 재해는 전체 재해의 11%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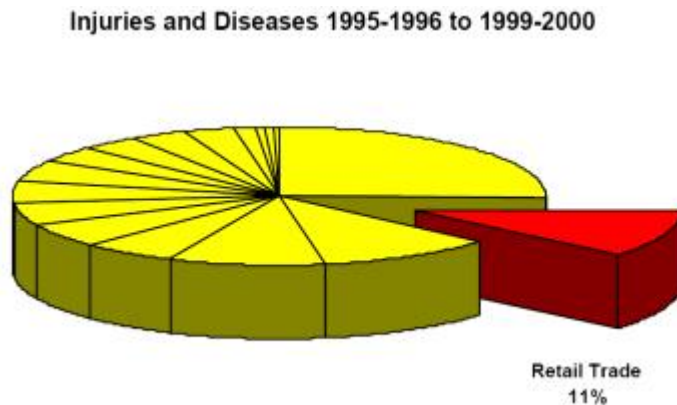


그림 13. 호주 소매업의 재해 발생수준(1995/96 - 1999-00)

사고성 재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육계통의 스트레스로 전체 사고성 재해의 41%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23%는 30일 이상 일을하지 못하는 재해이다. 그리고 3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근육관련 스트레스는 주로 허리로 집중되어 있다(33%). 관련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거운 물건을 선반위에 진열하는 과정에서 들고, 운반하고, 내려놓기 등의 행동
- 멀리 떨어져 있는 상품을 집어들리기 위하여 몸을 쪽 펴는 행동
- 가구나 상품진열대 등을 움직이는 행동

근육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재해들에 있어서, 30일 이상 일을 못하는 재해를 입는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4가지 기인물이 재해발생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22%는 물건이 포장된 상자, 18%는 음식물이나 음료, 3%는 저장용기, 3%는 채소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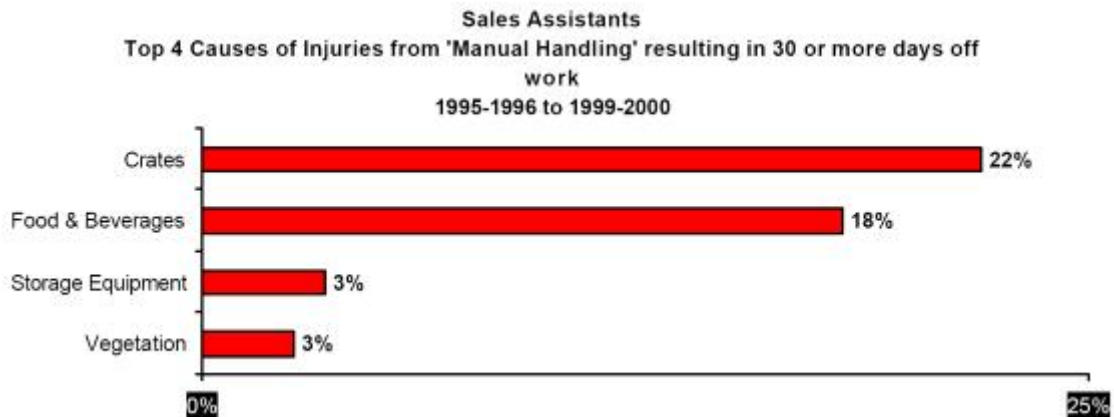


그림 14. 판매노동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장기요양 재해를 발생시키는 상위 4대 원인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재해는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 것으로 전체의 22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30일 이상 일을 쉬어야 했던 재해는 21 %였으며, 30일 이상 쉬는 재해의 19 %는 허리의 손상이었다. 주로 이러한 재해와 관련있는 작업은 이러했다.

- 물건의 손상으로 인해 액체가 흘러나와 젖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
- 높은 데 손을 뻗치기 위하여 바닥에 물건을 올려놓고, 물건을 밟고 올라가서 작업
- 재고과약 및 상품관리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재해는 무엇에 맞는 경우가 15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30일 이상 일을 못하는 재해는 13 %였으며, 다시 이 중에서 10 %는 엄지손가락의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작업은 이렇다.

- 움직이는 바퀴에 발이 끼는 경우
- 선반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상품 또는 물체에 맞는 경우
-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네 번째 재해는 15 %를 차지하는 물체에 부딪치는 경우이다. 이 재해의 7 %는 3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재해자의 22 %는 손가락에 재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작업의 예이다.

- 작업장에서 걸어다니다가 쌓여있는 상품 또는 문이나 창문틀에 다리가 부딪치는 경우
- 날카로운 것에 손가락을 베이는 경우
- 전기칼을 사용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경우

##### 5) 종합정리

해외의 도소매업 통계를 활용하여 유통서비스 분야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고, 몇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도소매업의 사망재해는 타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도소매업의 재해는 국가에 따라 발생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도소매업의 산업재해가 타업종에 비해 경미하다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소매업종의 재해율은 영국의 경우 100명당 0.3 - 1.1 수준이었으나, 미국의 4.5 - 5.3, 캐나다 New Brunswick은 휴업일이 발생한 재해율이 2.38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업종의 평균 재해율이 0.8 수준이며, 도소매업이라는 업종이 산재통계의 업종분류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 비교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은 산재은폐 때문에 낮은 것으로 실 재해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금속노조가 발표한 금속노조 소속 지회의 재해율은 평균 6 %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본 조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의 판매직군에서는 중량물이나 잘못된 자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상품의 운반과 진열과정에서 사고성 재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감정노동이나 인격적 폭력과 스트레스의 문제는 해외 재해통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하였다. 전통적인 산업재해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문제들이 유통서비스 분야의 안전보건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 4. 해외 유통서비스 관련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의제와 활동사례

### 1) RWDSU

RWDSU의 조직 명칭은 Retail, Wholesale and Department Store Union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다. 주요 조직대상은 백화점 노동자, 슈퍼마켓 노동자, 닭고기 가공공장 노동자, 식품 및 음료수 공장 노동자 등 매우 다양하다.

RWDSU의 주요 안전보건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화장실 이용을 위한 휴식 시간의 확보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안전, 사망대책마련
- 직장내 폭력
- 기타 중요 문제 : 근골격계 문제(중량물 및 고정된 작업자세 포함), 실내공기질 문제, 컴퓨터작업, 소방안전, 저온 작업, 안전한 바닥 등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였고, 화장실 이용을 위한 휴식시간의 확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운동의 배경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노동통제의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휴식을 제한하는 자본의 움직임이 있었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휴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친 것이었다. 이른 바 화장실 휴식(bathroom breaks)이라고 부르는 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장시간을 한자리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화장실 휴식 및 이를 위한 적절한 화장실 마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는데도 못가게 막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못가게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은 요로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드문 경우지만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신 중의 요로감염은 저체중아 출산과 관련 있으며, 신생아에게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빈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날의 온도와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물을 얼마나 마셨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10.141 조항에 작업장 내의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화장실은 청결해야 하고, 온수와 냉수가 함께 나와야 하며, 비누나 씻는데 필요한 물품들, 수건이나 손 건조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은 15명까지는 1개, 35명까지는 2개, 55명까지는 3개, 80명까지는 4개, 110명까지는 5개, 150명까지는 6개, 그리고 40명씩 증가 할 때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놓아야 합니다.

(출처 : [http://www.rwdsu.org/health\\_safety.html](http://www.rwdsu.org/health_safety.html))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는데도 못가게 막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화장실에 못가게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이다. 소변을 참는 것은 요로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드문 경우지만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신중의 요로감염은 저체중아 출산과 관련있으며, 신생아에게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장실의 개수에 대한 규정 등을 정해놓은 것

이다. 또한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화장실에 가는 빈도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날의 온도와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물을 얼마나 마셨느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포괄적으로 화장실을 언제든 갈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놓은 반면, 영국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대신 건강상의 이유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는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 2) USDAW

조합의 정식명칭은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이다. 영국의 가장 큰 노동조합 중 하나이며, 34만 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상점노동자, 창고 노동자, 운전자, 콜센터 노동자, 보험설계사, 정육점 노동자, 캐이터링, 세탁소, 홈쇼핑, 약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주요 안전보건 의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었다.

-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 폭력의 두려움 없는 현장 만들기
- 노동조합 조직화로 더욱 안전한 현장 만들기
- 노동안전보건대표자를 통한 적극적 현장 활동과 조직화

하루 종일 노동자가 서서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루 일과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매일같이 서서 일한다는 것은 다리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관절이 상할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길수도 있으며, 발가락의 염증이나 물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발뒤꿈치의 통증이나 평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은 불편함, 피로, 그리고 다리가 붓는 것이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발과 정강이, 종아리, 무릎, 넓적다리, 엉덩이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영국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직업병 관련 자료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가장 흔한 직업병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7 %가 다리쪽에 관련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192,000 명의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직업에 의한 다리의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다리 이상으로 인해 2003년/04년에는 약 2백2십만 일수의 노동손실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다.

“계속 서서 일하는 경우 심혈관계질환이 있던 사람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하지

정맥류나 만성정맥부전증도 발생할 수 있다. 다리와 발의 통증은 역시 계속 서서 일하는 것과 관련있다.” 카렌 메싱 교수의 의견이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서서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요통이 두 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고 한다. “통증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란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메싱교수의 의견 중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없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작업통제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서서 일할지 앉아서 일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적인 자세, 몸이 많이 긴장된 자세로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것은 혈액순환에 안 좋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자세가 아니라 여러 자세를 택할 수 있을 때 문제가 적어집니다. 물론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발에는 안 좋긴 합니다.”

2002년에 서서 일하는 것과 관련한 17개의 연구논문을 묶어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만성정맥부전, 다리와 발의 근골격계 통증, 조산, 유산 등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고령 노동자들과 중량물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나이 들수록 점점 무릎과 관절의 고통을 느끼게 되며, 결국 계속 서서 일하는 작업을 견딜 수 없게 된다. 다른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 임신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생겼거나 허리나 다리에 사고를 입어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도 역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게 되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출처 : Hazards

덕 러셀은 소매업 노동조합인 USDAW의 안전담당자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조합 역사 속에는 소매업 계산대에 의자를 놓아 앉을 수 있도록 투쟁한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또한 사업주 중에서는 테스코(TEESCO)나 세인스베리(Sainsbury's)처럼 의자를 갖다 놓고 앉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최근 노동조합이 싸우는 문제는 부츠 상점의 계산대 문제라고 한다. 새로운 계산대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 계산대는 서서 일하도록만 디자인되어 있다. “부츠 상점의 상품들은 계산대에서 충분히 앉아서도 다룰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덕 러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자를 제공하도록 한 법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주들은 고의적으로 의자를 없애고 계속 서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츠 상점 직원들 몸은 서서 일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

부츠 상점의 계산대를 서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은 부츠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소매업 노동조합인 USDAW의 조직활동가인 웬디 머피는 회사쪽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단순히 퍼치 의자(높은 의자)를 갖다놓는 것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림 15. 부츠상점모습

그녀의 동료들 중에는 서서 일하도록 디자인된 작업대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물론 의자를 가져다 놓으면 손님을 상대하지 않을 때에는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츠 상점의 계산대

앞에는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쉴 시간 같은 것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인간공학적인 매트를 바닥에 깔거나 직무순환을 실시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던 작업을 굳이 의자 없이 서서 일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USDAW는 부츠 상점에서 벌어지는 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법 집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Hazards

또 다른 사례로는 2005년 7월 7일 런던의 폭탄 테러 이후 영국의 갤러리들에서 복도에 있던 소파를 치운 것에 대한 투쟁이 있다. 미술품을 전시한 갤러리에서 경비를 보는 노동자들이 순찰을 돌다가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소파가 있었는데, 9.11 테러 이후 순찰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소파를 다 없앤 것이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소파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투쟁은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1992년 개정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REGULATION 11'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정리되어 있다.

1. Every workstation shall be so arranged that it is suitable both for any person at work in the workplace who is likely to work at that workstation and for any work of the undertaking which is likely to be done there.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paragraph (1), every workstation outdoors shall be so arranged that
  - a)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it provides protection from adverse weather;

b) It enables any person at the workstation to leave it swiftly or, as appropriate, to be assisted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c) It ensures that any person at the workstation is not likely to slip or fall.

3. A suitable seat shall be provided for each person at work in the workplace whose work includes operations of a kind that the work (or a substantial part of it) can or must be done sitting.

노동자의 작업이(또는 작업 전부는 아니더라도 작업의 상당량이) 앉아서 할 수 있거나, 앉아서 해야만 하는 작업일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만 한다.

4. A seat shall not b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3) unless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3항 규정의 목적에 적절한 의자라고 볼 수 없다.

a) It is suitable for the person for whom it is provided as well as for the operations to be performed; and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뿐 아니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이 적절해야 한다.

b) A suitable footrest is also provided where necessary.

필요하다면 적절한 발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폭력의 두려움 없는 현장 만들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제이다. USDAW에 따르면 소매업종에서 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매일 매순간 한명씩은 욕설을 듣고 있으며, 폭력이나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USDAW의 "두려움 없는 현장"운동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점 노동자들을 막대해도 좋다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소매업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상점노동자를 존중하는 날"은 그래서 2003년 9월 17일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번 해에는 7월 11일에 행사를 갖는다. 오른쪽 리플렛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맙시다"라는 USDAW 조합원을 상대로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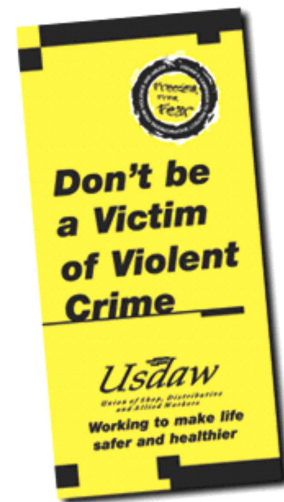


그림 16. USDAW의 폭력관련 리플렛

또한 USDAW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조직화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미조직노동자들은 조직노동자들에 비해 더 위험하며,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제도로서 안전보건대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노동안전보건대표자의 권리

- 조합원들의 불만이나 현장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에 대해 조사할 권리
- 사고 또는 아차사고에 대해 조사할 권리
-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관리자에게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작업장에 대한 정기적 현장 안전보건 진단을 할 권리
- 사업주가 가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을 권리
-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근로감독에 참여할 권리

USDAW는 안전보건대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안전보건대표자에게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안전, 보건, 복지를 지키는 활동이지만, 그것 외에도 조직적 관점에서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 USDAW 조합원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현장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 문제들은 현장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이며, 조합원 한 명에게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여러 명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안전보건대표자는 새로운 조합원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 노동조합에 대해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파업을 하거나 논쟁거리가 발생하였을 때, 언론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노동조합의 편에서 보도를 한다. USDAW는 기업주들이나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우리 대표자들은 너무도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섭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 조직활동을 지원한다  
안전보건 대표자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과 대화할 수 있고, 현장내 위험요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근무고려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USDAW에서는 안전보건대표자의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접촉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
- 재해를 입은 조합원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조합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가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무위반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영국에서 산재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아래의 포스터는 USDAW에 가입하면 두배는 더 안전하다는 내용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1000명당 5.3인데, 미조직 사업장은 1000명당 10.9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통계를 보여주면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하고 있는 것이

다.

**You're twice as safe with Usdaw**

Independent research shows that trade union safety reps do make a difference.

Workplaces with trade union safety reps are twice as safe as those where there is no employee consultation on safety.

	Injury Rate per 1000 workers	Predicted Injuries per Year
Joint Union Management Committee	5.3	58,300
No Union No Committee	10.9	181,500

Health Protection Agency,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012, June, 69(6)

Udaw safety reps can investigate hazards, inspect the workplace and take up issues on behalf of the members.

By using safety reps' legal powers to work with management, your safety rep can make your workplace safer and healthier.

Udaw safety reps are backed by experienced officials and have access to expert advice and quality training.

If you have any concerns about health and safety where you work talk to your Usdaw safety rep.

**Udaw**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  
www.usdaw.org.uk

**Udaw - looking after your health and safety**

Published by Usdaw, 108 Wilton Road, Manchester M14 6LJ. Twitter: @usdaw\_uk

그림 17. 조직화와 안전관련 포스터

그 밖에도 작업장 온도나 식수의 문제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USDAW가 보여주고 있었다. 역으로 영국에서는 서비스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식수에 관한 규제

Regulation 22

(1) An adequate supply of wholesome drinking water shall be provided for all persons at work in the workplace: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식수가 적절히 제공되어야만 한다.

- (2) Every supply of drinking water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 (a) be readily accessible at suitable places; and
  - (b) be conspicuously marked by an appropriate sign where necessary for reasons of health and safety.
- 1항에 따라 식수는 즉각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안전보건에 따른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3) Where a supply of drinking water is required by paragraph (1) there shall also be provided a sufficient number of suitable cups or other drinking vessels unless the supply of drinking water is in a jet from which persons can drink easily.

- 온도에 관한 규제  
Regulation 7
1. During working hours, the temperature in all workplaces inside buildings shall be reasonable.  
작업시간동안 작업장내의 온도는 적절해야 한다.
2. A method of heating or cooling shall not be used which results in the escape into the workplace of fumes, gas or vapour of such character and to such an extent that they are likely to be injurious or offensive to any person.  
냉난방기구에서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흠이나 가스나 증기를 내놓지 않아야 한다.
3. A sufficient number of thermometers shall be provided to enable persons at work to determine the temperature in any workplace inside the building.  
건물내의 작업장 온도를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온도계가 곳곳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은 적극 홍보하고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 포스터는 온도에 관한 USDAW의 포스터이다.

# Keep Your Cool!



## Tackling Heat Stress at Work

The law says your employer must maintain a reasonable temperature in your workplace.\*

There should be enough thermometers in the building for you to determine the temperature where you work.

The law doesn't specify a maximum reasonable temperature – but research shows that high temperatures can cause health problems.

Loss of concentration and accident rates increase at temperatures above 25°C. Heat stress and sweating can cause headaches, nausea, fainting and skin rashes.

Prolonged exposure to high temperatures causes heat stroke which can be fatal.

\*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62, Reg. 7.

If it is too hot where you work there are things your employer can do:

- Insulate or remove sources of heat.
- Improve ventilation to extract hot air/steam and draw in cooler fresh air.
- Install air-conditioning equipment to lower temperatures.
- As temporary measures (for example, in spells of hot weather) fans, portable air-conditioning units, relaxing strict dress codes and providing cool drinks can all help.

If it does get too hot where you work talk to your Safety Representative. Usdaw Safety Representatives have legal powers to investigate potential hazards, inspect the workplace and take up issues with management to make 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law.

If you have a problem and need help and advice or want to join the union, contact your union rep or ring the union helpline

**0845 6060640\***  
or visit the union's web site  
**www.usdaw.org.uk**

\*calls charged at local rate

**Usdaw**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

**Usdaw – Working for Health and Safety**

Published by Usdaw, 198 Winstanley Road, Manchester M14 6LJ      Poster RT

그림 18. 더위와 관련한 포스터

그 밖에도 USDAW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Forum)에 들어가면 식수를 설치하는 것 등에 대한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포스터는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다. 스트레스는 최근 “스트레스성탈진증후군(Burn-out syndrom)”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How do **you** feel after a day's work?

**Health and Safety Checklist**

- Backache from seat filing and heavy lifting?
- Sore and bruised from trips and falls?
- Freezing cold in winter or roasting hot in summer?
- Fed up with abusive customers?
- Frightened or angry after coping with an aggressive shoplifter?
- Blinding headache from concentrating on the checkout for 4 hours without a break?

**Usdaw**  
Voice of Shop, Distributors and Allied Workers

**Working for Health and Safety in Shops**

**You don't have to put up with bad working conditions.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Stand up for your rights**

Employers do have legal duties to care for your health and safety.

Because of ignorance or neglect, they don't always do everything they should.

You need someone in your workplace to keep an eye on things and make sure you are getting the full protection of the law.

**You're better off in the union**

Where an employer recognises a trade union the law gives the union members the right to elect safety representatives.

Trade union safety representatives have legal powers:

- to inspect the workplace regularly
- to investigate potential hazards
- to represent the union members on health and safety issues

Where the union is organised, there is someone who can represent your interests - the safety representative.

그림 19. 노동강도와 피로에 대한 USDAW의 포스터

물론, 전통적인 문제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대책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Back us up!**

Every year 1.2 million workers suffer from work-related musculoskeletal problems like back pain. The Government has launched a 'Back in Work' campaign to reduce the toll of injury. Usdaw is fully signed up to the campaign. We want to work with employers to make your workplace safer and healthier.

*If you think there are problems where you work, contact your Usdaw safety rep.*

**Usdaw**  
Voice of Shop, Distributors and Allied Workers  
www.usdaw.org.uk

**Usdaw - looking after your health and safety**

Printed by Delta, 10 Wilton Road, Barking, E11 1BQ. Photo: York 2

그림 20. 근골격계질환 관련 포스터

### 3) Hazards

USDAW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영국의 Hazards에서는 직업의 귀천 차별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서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보건의 문제이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100년 전부터 영국의 의사들은 계속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위험을 경고하였으나, 영국에서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하루 대부분의 노동시간을 서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 매일 대부분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지정맥류,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장애 및 부종, 관절의 문제, 심혈관계 문제 및 임신관련 문제들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 작업중 앉을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한 조항으로 사업주를 처벌한 적은 없다. 지금보다는 오히려 1917년에 법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되었다. 특정 조건하에서는 의자를 제공하도록 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 소매업, 제조업, 보건의료산업에서 각종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가장 큰 기업에서조차 그들의 직원에게 의자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 대부분의 직업은 서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훨씬 작다. 작업대의 디자인만 바꾸더라도 서서 일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는 것을 주저한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서 일하면 관리자들의 눈에는 게으른 노동자로 비춰질 수 있고, 고객의 눈에는 건방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더 장시간 서서 일할 것을 강요받는다.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직업에서는 의자에 앉지 않고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즉, 노동에 대한 귀천의 차별이 노동자를 서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 4) 해외 노동조합 의제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몇 가지 의미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국가의 규제가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은 그 규제를 활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유통서비스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은 산안법에 기초한 자신들의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화장실의 개수와 조건을 언급해 놓은 것이나, 영국의 법이 화장실, 식수, 온도, 의자 등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작업장을 관리하고 직업병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안전은 노동에 대한 차별과 무시로부터 발생된다는 철학 속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만들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화장실이나 의자를 제공하라는 요구나 서비스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관철하는 철학적 결론이 있었다. 그것은 유통서비스노동자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셋째, 안전을 위해 조직하라!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해질 권리를 실현하게 된다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이것은 영국의 노동자안전보건대표자제도와 같이 국가적으로 뒷받침되는 안전보건 활동권을 활용하고 있었다. 백화점노동자나 대형마트 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소형 유통매장의 노동자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나 지역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조합원 인터뷰 결과

조합원 인터뷰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한다. 인용된 사례는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이다.

### 1) 주로 발견된 안전보건 문제

안전보건 문제를 무엇을 느끼는지 물어보았고,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 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주로 감정노동, 고객으로부터 받는 인격적 모멸감(욕이나 인격 무시),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관리자로부터 받는 인격적 모멸감, 실적과 관련한 압박이나 모니터링, 동료사이의 과도한 경쟁체계,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가정일과 관련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몇가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 이리하다.

저는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업무지시나 고객으로부터 받는 모델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스트레스구요. 그걸로 인해서 내 성격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실적에 너무 치우쳐서 실적으로 사람의 등수를 매기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문제도 그렇구요. 장시간 서서 일하기 때문에 몸이 고되고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두...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식에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회사에 꺼내면 눈치가보이고 찍힌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도 포기하고 출근을 했는데, 고객을 보면서 웃어야 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H백화점).

예, 모니터... 백화점에서도 하고 본사에서도 해요. 그거 정말 스트레스가...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람의 친절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건데. 그걸 꼭 매뉴얼에 의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100점인거구, 정말 친절했어도 매뉴얼대로 안하면 빵점이에요. 그런 평가가 어디있어. 감성적인 부분인데. 저희는 본사에서 하는게 되게 심해서 노란봉투가 날라와요. 그거 잘못하면 월급 안올라요. 점수 잘 받으면 월급 올라가냐 그건 아니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 걸리면 그만 둘 생각해야 되요. 두 번째 걸리면. 모두 한테 낙인 찍혀요. 무언의 압력이 오죠. 점수도 공개되요. 1등부터 몇 백 등까지. 정말 심각하죠. 다 싫어하죠(L백화점).

고객한테 떡살을 잡힌 경우도 있어요. 사용한 거 안바꿔줬다가. 자기가 사용했으니까 안바꿔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안바꿔준다고.. (맞은 적도 있어요?) 저는 맞은 적은 없는데 맞은 직원도 있어요. 던지는 거 맞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요 맞아도 고소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백화점 이미지 관리해야하거든요(H백화점).

## ② 노동강도와 작업조건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고, 식사시간이 불규칙하였으며,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화장실을 마음놓고 갈 수 없거나,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같은 것이 주로 지적되고 있었다.

저는... 제 체력은 여덟 시간 근무나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 체력의 이상을 회사는 항상 요구하고 그 이상을 해야하니까... 그리고 실적도... 여덟 시간 일했을 때 실적을 올릴 수

는 없거든요. 실적을 올리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회사는 몸도 그만큼 안따르고, 가정도 등한시해야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체력이... 너는 몸이 강한 편은 아닌데.. 정신적인 것은 좀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되니까...(L 백화점)

웃기지만. 직원들 중에 방광염 이런 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고객 상대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고객 밀릴 때는 못가요. 참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몇 군데 없고 멀리 있다보니... 물을 안 먹어요. 화장실 안가려고.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다들 그래요. 백화점 문화가 좀 낙후되어 있어요(H백화점).

예, 많죠. 애기가 아팠을 때도, 폐렴에 걸렸는데도 저는 저녁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그냥 출근했어요. 애기가 병이 낫어도 남편이 너무 아파서 혼자 응급실에 갔는데, 저는 그냥 출근했어요. 같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응급실에 갔는데두요?)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가면 누군가가 대체해서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그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휴식을 뺏을 수 없어서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는 이상,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빠질 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 매니저니까 누군가 돌아가시면 조절해서 좀 빠질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애들은 일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도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H백화점).

저희는 아침 9시반까지 출근인데 여덟시 반이나 아홉시까지 가요. 회사는 아홉시반부터 인정해주는데 준비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회사가 우리한테 업무를 요구하는 게 많아요. 교육도 해야 하고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해야 해요. 모니터가 왔을 때 메이크업을 체크하거든요. 퇴근은 평균 아홉시 정도에 해요. 여덟시에 폐점하면 정리하고 나가는데 저는 아홉시... 연장하면... 연장하고 마감하고 그러면 아홉시 반. 열세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거의 요즈음에 백화점이 주말연장을 다 하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평균 8일 정도는 연장근무를 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큰 매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일찍 끝나는 거예요. 작은 매장은 열시 반까지도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조금 편한 편이에요.(L백화점)

### ③ 근골격계 위험요인

장시간 서서 노동을 해야 한다거나 잘못된 계산대의 디자인 때문에 힘들다거나, 좁은 공간에서 고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거나, 중량물을 들어야 한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있었다.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직군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요즘에 저 엄지손가락 마비가 왔어요. 엄지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 움직이지 않아요. 애  
가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구요. 한 달 동안 볼펜을 잡지 못했어요. 혈액순환이 안되서 그  
렇데요. 무거운 거 박스 드는 거 그런 건 일도 아니거든요.(H백화점)

#### ④ 작업환경의 문제

의외로 온도나 소음, 먼지 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다.

\*\*점의 경우 정말 노후 되었잖아요. 그 안에 바퀴벌레나 쥐가 진짜로 다녀요. 정말로. 직  
원들은 그 안에서 먹고 생활하고 되게 비위가 상해요. 이비인후과를 항상 다녀요. 먼지  
가 많으니까. 안과 이비인후과 달고 살지. (병원을 자주 가세요?) 이비인후과도 그렇지만,  
저는 몸살이 심해요. 몸이 항상 안좋아요. 알레르기도 있고.(L백화점)

#### ⑤ 건강문제의 발생

결국,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어떤 노동자들은 하지정맥류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대결절로 산재처리  
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였다. 방광염이나 이비인후과 계통의 문제 및 소화기장애  
등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저 옛날에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스  
를 했어요. 7월 달에. 그런데 회사에서 길게 쉴 수가 없었어요. 인대 찢어져서 두 달은  
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길게 쉴 수가 없어서 기브스 자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완전히 고질병이에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기브스 해야 하는데 못  
하고 그냥 나왔다가 뼈가 안붙어서 결국은 회사 그만둔 직원이 있어요. 더럽고 치사해요  
(L백화점).

우울증... 사실 제일 걱정돼요. 직장에 대한 얘기를 남편한테 구구절절히 얘기를 못하겠어  
요. 대화가 안되요. 남편은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못하구요. 저 뿐만 그  
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랑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혼자 풀죠.  
집에 가면 말이 현저히 줄죠. 매장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이 아파요. 집에 가면 말  
안하죠. (남편하고 싸움은 안해요?) 남편하고 싸울 때는 과격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  
데, 남편하고 싸울 때 뭔가 집어던지고 과격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

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과격하고 폭력적이에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고객들을 상대로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괴감 이런 것도 생기고 집에 갈 때 우울해요. 난 왜 이럴까. 집에 갈 때 혼자 운전할 때 우울해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내가 내일 이곳에 또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우울해요. 저희가 좀 심한가요? 다른 데보다 심한가요?(H백화점)

## 2) 주요 문제의 정리

아직 인터뷰가 진행 중이며,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편화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유통서비스노동자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문제의 원인과 종류가 유사하다면, 다른 나라 노동조합들의 적극적 활동이 매우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주요 의제와 접근방향에 대한 제안

### 1)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규제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외국과 같은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규제를 마련해 놓고서 그것을 지키도록 사업주를 유도하거나 관리감독하는 행정을 취하지 않고 있어 규제가 문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동조합 역시 조합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해오지 않아 법조항들의 쓸모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아래의 법조항들은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아래의 조항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조항들이다.

사무실 환경 : 분진, 청결 등

####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0조(사무실 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무실의 청결) ①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 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무 스트레스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고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채광 및 조명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64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아니하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의자와 휴게시설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76조 (휴게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8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식수의 문제나 화장실의 개수와 조건이 정해진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강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조항들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의자의 제공 등은 법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제도상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노동조합의 참여권과 관련된 것이다. 영국의 노동안전보건대표자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것이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노동자들에게 국한되어 임명되어 있다. 그나마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만 영국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산별노조에 도움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위축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0> 2006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축자 현황<sup>1)</sup>

(단위: 명, %)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의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직 군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통신 및 방송	병 원	철도 및 지하철	가스 및 전기(전력 화력발전소)	광 업	기타 업종 (서비스업 등)		
775 (21.2)	1,992 (54.4)	367 (10.0)	133 (3.6)	78 (2.1)	66 (1.8)	42 (1.1)	5 (0.1)	205 (5.6)		151
3,663(100.0)										
3,814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영계		노동계			산재예방전문단체			기타		
사용자 협회 <sup>1)</sup>	상급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산업 안전협회	대한산업 보건협회	기타 산업재해 예방전문단체	기타단체			
10 (6.6)	46 (30.5)	25 (16.6)	9 (6.0)	41 (27.2)	8 (5.3)	8 (5.3)	4 (2.6)			
10(6.6)		80(53.1)			57(37.8)			4(2.6)		
151(100.0)										

주: 국회 제정권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2006.3.31.)를 재구성(연구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회사명을 보고 임의도 분류)하였음.

1)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총협회

<표 3-1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임기, 업무

구분	사업장	사업장의
위촉방법 및 임기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소속 단체에서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해촉사유(시행령 제45조의3)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단체에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한 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업무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한 함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이에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이에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서비스 산업은 매장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건설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산별노조가 적절한 조직방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자 안전보건 참여제도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별시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서비스노동조합이 여러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하여 노동부에게 법 집행을 강제하도록 이끌어내는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2) 중요 과제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통서비스 분야 노동형태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유사하였으므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인터뷰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① 국가기준 마련 및 사업장 근로감독 요구

**의자를 무조건 제공하고, 원할 때 사용하기** : 산안법상 의자제공 의무에 대한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노동부 합동 감독 및 조사 후 의자 지급하고 앉기 운동

**화장실 자유롭게 가기** : 법적인 화장실 설치기준 마련, 화장실 자유 명시

**유통서비스 실정에 맞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하기**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정, 유해요인 조사, 현장 개선

**적정온도 기준을 만들어서 지키기** : 온도기준 마련

**유통서비스 산별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만들기** :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 기  
제 만들기

② 대사회 캠페인

**서비스 노동자를 존중하는 날 캠페인 전개하기** : 노동조합 캠페인

③ 단체협약에 의한 건강권 쟁취

**노사공동 또는 노동조합내 폭력신고센터 운영하기** : 단체협약

**사업장 내 탁아/육아시설 확보 또는 지원** : 단체협약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정해놓고 쉬기** : 단체협약

**스트레스 해소 대책 마련** : 국가 차원 및 사업장 차원 대책 마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3)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에 대한 제안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2008년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이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의제를 제기할 것인지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활동의 조건부터 거론하고자 한다. 우리는 외국 산별노조들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관점을 우리 운동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동조합 필요를 느끼는 계기이며, 조직화의 결정적 동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안전보건활동가 양성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법제도를 쟁취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의 조합원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비스연맹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두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서비스연맹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연맹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로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활동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한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핵심이슈를 정하여 민주노총 취약분과와 서비스연맹이 함께 사회적 의제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인터뷰 과정 및 대의원들과의 토론과정에서는 먼저 의자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성과를 거두면서 폭력과 화장실의 문제를 차츰 제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는 사회학, 산업의학, 산업위생학, 인간공학 전문가들로 서비스연맹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지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2008년 유통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제를 정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향후 서비스노동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별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만들고 권한을 강화하는 작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만난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은 조사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희망을 품게되었다. 이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현실화되기 위한 사업을 꼼꼼히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08년 백화점에 대형마트에 의자를 놓는 것부터 시작하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유통서비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설문지에 대해서도 감동적이구요. 저희를... 누군가 이렇게 사는 삶을 아는구나... 그걸 인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감동스럽고.. 그리고 나쁜 아니라 내 아이들 대에서도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저는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다 좋잖아요. 대책들이... 사실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보고 안가지고 있던 거니까 좋다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을 못느끼고 좋다고 하는게... 의식 같은게... 우리나라가 경영위주의 나라니까. 대통령부터 경영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공약하는 나라고. 그런데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경영도 하기 좋을텐데, 그런 점에서 사회적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캠페인 이런 걸 좀 하면 좋겠어요.

## 7. 참고문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 2007.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ttp://www.osha.gov>

영국안전보건청(HSE), 산업안전보건법(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http://www.hse.gov.uk>

윤조덕,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2006.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Summary, 2004

Hazards magazine, <http://www.hazards.org/>

RWDSU, <http://www.rwdsu.info>

USDAW, <http://www.usdaw.org.uk>

WHSCC, <http://www.whscc.nb.ca>